

- 2024년도 제1회 일반·특별회계 -

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(안) 검토보고

(도시정비신속추진단)

2024. 09. 03.

전문위원 정 진 만

1. 제안이유

○ 2024. 08.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추가경정예산(안)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	증(△)감	
			금 액	비율(%)
세 입	386,702	0	386,702	순증
세 출	2,290,969	1,611,072	679,897	42.20

□ 세입현황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산액	기정액	비 교 증 감	
			증(△)감	비율(%)
계	386,702	0	386,702	순증
일반회계	386,702	0	386,702	순증
특별회계	0	0	-	-

☐ 세입 검토의견

○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세입 추가예산은 3억8,670만원(100% 순증)으로 편성되었으며, 세입 주요내용은

- 주택재개발 정비계획(안) 수립용역 2억4,950만원
-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1억1,341만원
- 2023 회계연도 보조금 미사용 잔액 2,378만원으로 편성되었음.

☐ 세출현황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	비 교 증 감	
			증(△)감	비율(%)
계	2,290,969	1,611,072	679,897	42.20
일반회계	2,290,969	1,611,072	679,897	42.20
특별회계	0	0	-	-

☐ 세출 검토의견

○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억7,989만원(42.20%) 증액된 22억9,096만원으로 추가 편성되었으며, 세출 주요내용은

- 석관동 124-42번지 일대 모아타운¹⁾ 관리계획 수립용역²⁾(모아타운사업 시

1)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는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“모아주택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, 다양한 편의 시설도 함께 조성됨.

▷ 세부요건 : 10만㎡미만, 전체 노후도 50% 미만

설비) 1억1,341만원(시비)

- 정릉동 898-1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(안) 수립용역³⁾(재개발 공모사업 추진) 2억4,950만원(시비)
-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(안) 수립 용역 3억원⁴⁾
- 하월곡동 70-1, 2022 정비계획 수립용역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,698만원 등임.

▷ 주요혜택

- 인센티브 등을 통한 사업여건 개선
 - 가로구역 요건완화, 사업면적 확대(1만㎡→2만㎡)
 - 용도지역 상향 1종→2종, 2종→3종(증가되는 용적률의 50% 임대주택 기부채납)
 - 개별사업 노후도 완화(67%→57%)
 - 2종(7층) 10층이하 →평균 13층
2종 15층 이하 → 제한 폐지
-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허용(건축협정 필요)
- 도로 폐도 가능(기존 도로 삭제 가능)
- 공영주차장 및 공원조성 공공지원

2) 사업내용 : 2023. 11. 27.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

- 위 치 : 석관동 124-42번지 일대
- 규 모 : 48,144㎡
- 사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12개월
- 사 업 비 : 1억1,341만원(총사업비 3억4,933만원, 시비70 : 구비30)

3) 2024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

- 위 치 : 정릉동 898-16번지 일대
- 규 모 : 53,971㎡
- 사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20개월
- 사업내용 : 정릉동 898-16번지 일대에 대한 재개발 사전타당성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
- 총사업비 : 4억9,900만원(구비50 : 시비50)

4) 공공재개발 및 주택재개발(신속통합기획)사업 후보지 모집이 연 1회에서 상시로 전환됨에 따라 하반기 선정 후보지에 대한 용역비 추가 확보 필요

- 후보지 신청구역(2개소) : 장위동 219-233번지 일대, 정릉동 16-179번지 일대
- 동의서 징구 중인 구역(2개소) : 하월곡동 90-206번지 일대, 종암동 103-18번지 일대

4. 검토결과

-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⁵⁾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및 요건에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.

5)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